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의원 입법 동향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6회 임시회(3. 5. ~ 3. 12.)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s://council.gangwon.kr/minutes/bill/search/accept.do>

## 제326회 임시회 조례안 처리 목록

### ◆ 총 건 : 의원발의 13건

| 상임<br>위원회          | 조례안명                                  | 발의자    | 본회의<br>처리결과<br>(2024. 3. 12.) |
|--------------------|---------------------------------------|--------|-------------------------------|
| 기획행정<br>위원회<br>(2)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         | 박대현 의원 | 수정가결                          |
|                    |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심영곤 의원 | 원안가결                          |
| 사회문화<br>위원회<br>(6) |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 정재웅 의원 | 수정가결                          |
|                    |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심오섭 의원 | 수정가결                          |
|                    |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오섭 의원 | 수정가결                          |
|                    |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미희 의원 | 수정가결                          |
|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미희 의원 | 원안가결                          |
|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미희 의원 | 수정가결                          |
| 농림수산<br>위원회<br>(1) | 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홍성기 의원 | 원안가결                          |
| 안전건설<br>위원회<br>(1)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 최재석 의원 | 원안가결                          |
| 교육<br>위원회<br>(3)   |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김기하 의원 | 원안가결                          |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조성운 의원 | 원안가결                          |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 김용래 의원 | 원안가결                          |

### 《참고 : 조례 제정 절차 등》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 제326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24. 3. 12.(화)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 공포)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 요구 조례안의 확정)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조례의 효력 발생)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다만, 부칙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2조

## 제32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소개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박대현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국민의힘 · 화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중 공공단체 위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단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자·출연기관을 말하고, “공공단체 위탁·대행”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재위탁·재대행”이란 공공단체에 위탁·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간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대행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공단체 위탁·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공공단체 위탁·대행을 하려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단체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아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③에 따라 공공단체 위탁·대행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공공단체 위탁·대행에 관하여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공공성·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심영근 의원(의회운영위원장 · 국민의힘 · 삼척2)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해야 하고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 ■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 발의 : 정재웅 의원(사회문화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춘천5)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 · 증진에 기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조례에서 “통합돌봄”이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거 · 보건의료 · 요양 ·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복지와 보건을 연계한 통합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통합돌봄 대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 제5호 · 제8호에 따른 아동,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그 밖에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통합돌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심오섭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2)

■ 공동발의 : 김길수 의원(기획행정위원장 · 국민의힘 · 영월1)

「세계유산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계유산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계유산은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을 지닌 자산이므로 이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활용하면서 미래세대에 양호한 상태로 인계해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세계유산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 ·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우수한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④ 세계유산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심오섭 의원



김길수 의원

## ▣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심오섭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2)
- 공동발의 : 김길수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영월1)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어통역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도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 도지사가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물 제작에 관한 규정을 통해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농인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사를 채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등 필요한 곳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도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물은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상 한국수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자자막으로 제작할 수 있다.



심오섭 의원



김길수 의원

## ▣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원미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2022년도 입법평가에 따라 심화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조례에 대한 정비와 함께 조례 내용을 현재 사업 내용에 부합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도지사는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노후준비·재무설계 등 교육 지원사업,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사업 대상을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조례안

- 발의 : 원미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2022년도 입법평가에 따라 심화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조례에 대한 정비와 함께 조례 내용을 현재 사업 내용에 부합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도지사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도지사는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원미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2021년 및 2022년 입법평가에 따라 심화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조례들에 대한 정비와 함께 조례의 내용을 현재 사업 내용에 부합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 ▣ 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홍성기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홍천2)

■ 공동발의 : 김용복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고성),  
박호균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1),  
윤길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무소속 · 영월2),  
최종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평창2)

강정호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속초1),  
엄윤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인제),  
전찬성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8),

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유림의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산림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 · 효율적 산림관리, 산림기능 증진과 임업의 경쟁력 증진 및 육성, 자연친화적 도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산림복지 증진 및 건전한 산림문화 진흥의 기본이념에 따라 도유림을 경영 및 관리해야 한다. ② “도유림”이란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산림을 말하고, “도유림의 경영”이란 도유림 안에서 조림 · 육림 · 임목생산 · 산림관리기반시설설치 · 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 · 사회 · 문화 · 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 · 증진하는 활동을 말하며, “도유림의 관리”란 도유림의 보전, 사용허가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①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경영계획을 10년마다 수립 · 시행해야 한다.



홍성기 의원



김용복 의원



강정호 의원



박호균 의원



엄윤순 의원



윤길로 의원



전찬성 의원



최종수 의원

##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 발의 : 최재석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동해1)



도시재생사업의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확산시키기 위하여 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시행, 사후관리 컨설팅 및 지원, 모니터링 평가 등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완료지역의 도시쇠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하고,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이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기 6개월 전인 지역을 말하며, “사후관리지원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확산하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전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연 2회 이상 추진해야 한다.

## ■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 : 김기하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동해2)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책임이 기존 교육감에서 교육감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명 개정 등을 통해 평생교육기관 지정 대상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평생학습관은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계획 수립·운영·홍보·상담,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 및 평생교육 정보 수집·제공,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및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의 사항을 수행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중 평생학습관 운영에 적합한 기관, 교육문화관 및 교육문화관 분관 중 평생학습관 운영에 적합한 기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운영한다.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발의 : 조성운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삼척1)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 기숙사 운영학교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하고, “기숙사”란 해당 학교 내에 학생 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법 제6조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학교시설을 말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숙사 입사학생(이하 “입사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 입사학생들의 면학과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며,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또한, 학교장은 입사학생이 공동·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숙사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 기준에 따라 기숙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 발의 : 김용래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3)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하고,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학생 진로·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저소득·다문화·탈북가정 지원에 관한 사업,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 부지, 교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지원 사업, 교재·교구 지원 사업, 학생 통학 지원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